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성평등가족위원회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에 시·도지사 협의체 및
시장·군수·구청장 협의체 추천위원 추가 〉
■ 김한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248호)

2026. 2.

성 평 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에 시·도지사 협의체 및 시장·군수·구청장 협의체 추천위원 추가	2
[참고자료]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한규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12. 15.
3. 회 부 일 : 2025. 12.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울·불안, 가정불화, 경제문제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현행법에 따라 설치되는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청소년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의 실태와 현실적인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청소년과 접촉할 기회가 많은 사람을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국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Ⅲ. 검토의견

1.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에 시·도지사 협의체 및 시장·군수·구청장 협의체 추천위원 추가

개정안은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에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¹⁾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제1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청소년정책위원회) ① ~ ③ (생략) ④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1. ~ 16. (생략) <u><신설></u>	제10조(청소년정책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1. ~ 16. (현행과 같음) 17.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15호 및 제16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제4항제15호, 제16호 및 제17호----- -----.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에 설치하는 위원회로, 현행법²⁾은 위원장 1명을

- 1) 「지방자치법」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 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2. 시·도회의의 의장
 3.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4.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
- 2) 「청소년 기본법」 제10조(청소년정책위원회) ①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에 청소년정책위원회를 둔다.
 - ② 청소년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5. 둘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청소년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15호 및 제16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각각 전체 위원의 5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④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3. 교육부차관
 4. 통일부차관
 5. 법무부차관
 6. 행정안전부차관
 7. 문화체육관광부차관
 8. 산업통상부차관
 9. 보건복지부차관
 10. 고용노동부차관
 11. 중소벤처기업부차관
 - 11의2. 기획예산처차관
 1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위원장
 13. 경찰청장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15.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6.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실적 등이 풍부한 청소년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청소년
 - ⑤ 제4항제15호 및 제16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⑥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를 둔다.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과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실적 등이 풍부한 청소년 중에서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위촉하는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민간위원 및 청소년위원의 위원의 임기는 2년임.

2026년 1월 현재 제5기 청소년정책위원회³⁾의 위원은 위원장 1명, 정부위원 14명, 민간위원 6명, 청소년위원 6명 등 총 27명임.⁴⁾

개정안은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에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시·도지사 협의체 및 시장·군수·구청장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여 청소년정책 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취지임.

유사 입법례를 보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상 남북관계발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정책위원회 및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위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5기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 : 2024년 3월 ~ 2026년 3월

4)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 현황>

구 분	구 성
위원장 (1명)	성평등가족부장관
정부위원 (14명)	재경부·과기정통부·교육부·통일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노동부·중기부·기획예산처 차관, 방미통위 부위원장, 경찰청장
민간위원 (6명)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
청소년위원 (6명)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실적 등이 풍부한 청소년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

자료: 성평등가족부

전위원회⁵⁾, 「고용정책 기본법」상 고용정책심의회⁶⁾,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관리위원회⁷⁾ 등의 경우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을 위한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및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등의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지방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등 지방자치단체 역시 위기청소년 등을 지원하는 추진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자가 청소년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
- 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남북관계발전위원회) ①기본계획, 그 밖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제2호의 위원 중 10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 중 1명 이상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남북관계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3.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 6)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①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고용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고용심의회로 볼 수 있다.
 ③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1.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2. 고용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전국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또는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감염병 또는 감염관리를 전공한 의료인
 3. 감염병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소유한 사람
 4.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시·도지사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감염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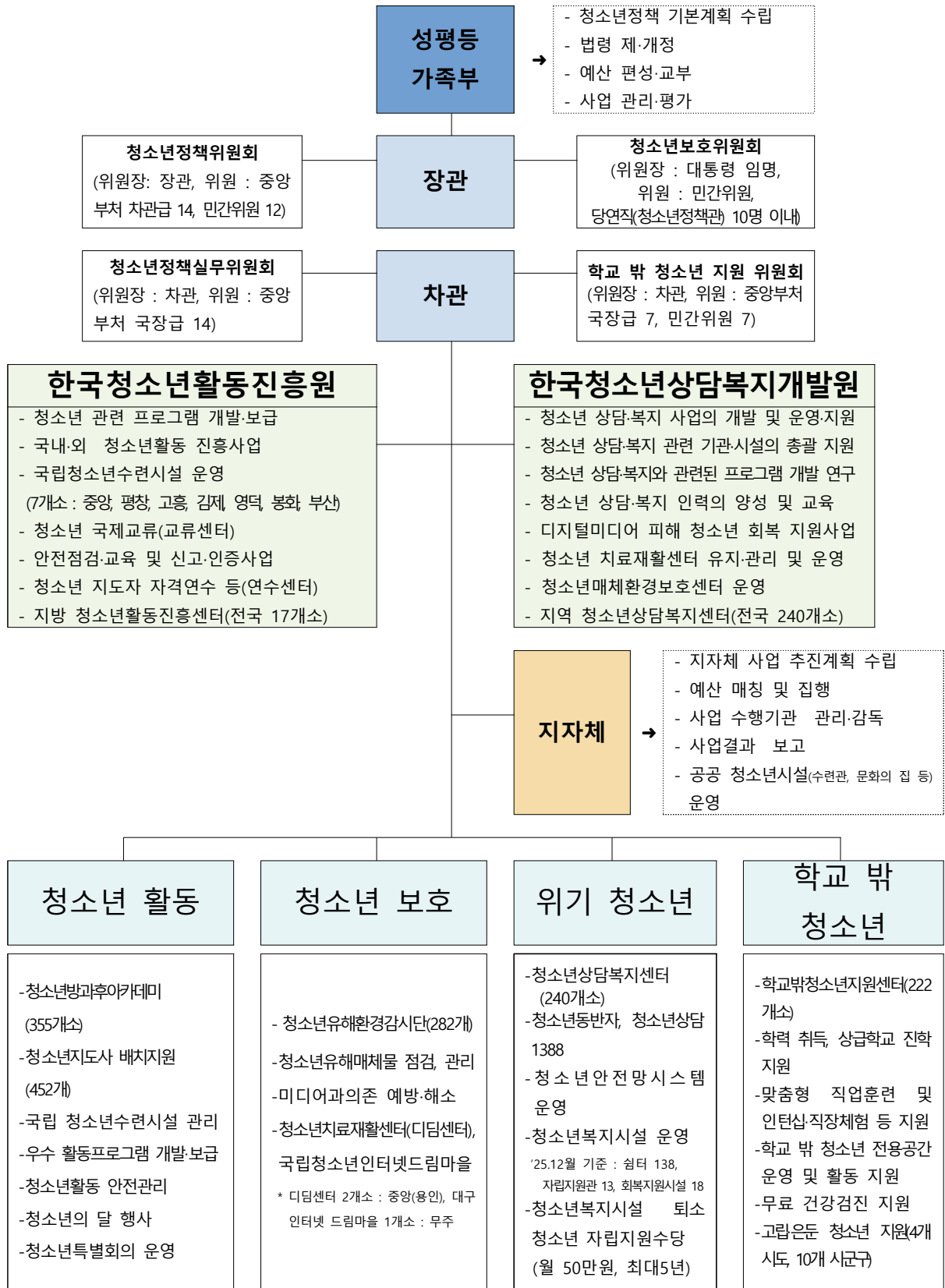
필요가 있음.

개정안과 같이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도지사 협의체 및 시장·군수·구청장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조정 시 지역 사회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 실태, 욕구 등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높은 사람을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수용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645

[참고자료 1]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자료: 성평등가족부